

속초시 공고 제2011 - 394호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속 초 시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 방지목적으로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금고지정시 수의계약 사유중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항을 삭제

3.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825(2011.6.1)호 및 강원도 감사관

-6330(2011.6.16)

4. 예고기간 : 2011.7.19 ~ 8. 8(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세무과(우편번호217-701)

전화 : 033-639-2163, 팩스 : 033-631-0778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속초시 금고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競爭)에 부쳐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된 현재의 금융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삭제)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競爭)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속초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금고 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금고 지정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금고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월 전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현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0.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선(안)
제4조(금고지정) ①시장은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競爭)에 부쳐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된 현재의 금융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競爭)에 부쳐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된 현재의 금융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삭제)